|  |  |  |
| --- | --- | --- |
| **코로나19 전염병 방역 재정지원 정책조치 Q&A**2020년 3월 20일, 재정부 판공청재정지원을 통해 전염병 방역을 지원하는 정책적 조치가 실현되고,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부서의 중요한 임무이다. 사회 각계가 재정지원을 통해 전염병 방역을 지원하는 정책적 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부는 정책 수익자 및 정책 실행자의 입장에서 발표된 정책 조치를 분류 및 정리하여 <코로나19 전염병 재정지원 정책조치 Q&A>를 작성하여 열람용으로 제공한다. **기업용 정책 조치** **(1) 자금지원****Q11.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대출에 재정 이자할인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이 발표되었는지? 대출자금 사용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A11: 2020년 신규 증가한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대출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인민은행 전용 재대출 지원 금융기구가 우대이자율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중앙재정에서 이자할인을 지원하며, 이자할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우대대출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 이자할인 지원정책을 향유하는 대출기업은 신용대출 자금을 유용하여 기업의 기타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자금을 금융투자, 투자상품 등 매매차익을 얻는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자금을 전염병 방역과 관련이 없는 기타 생산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국가가 통일 배치하는 물자 생산에 불복종할 수 없다. 금융기구 수신한도액은 명단 내 기업의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관련 생산경영 활동 자금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전용 재대출을 운용하여 지급되는 대출자금을 명단 내 기업의 일반적인 자금 수요에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 이미 실행된 대출금을 사전에 회수하고 이를 재대출자금으로 불법 획득할 수 없다. **Q12.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의 융자담보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발표되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A12: 전염병 영향을 받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각급 정부성 융자담보, 재담보기구가 담보 및 재담보 요율을 인하하고 반(反)담보 요구를 취소한다. 전염병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지역의 융자담보기구, 재담보기구에 대하여 국가융자담보기금은 재담보비를 50% 감면하여 수취한다. 기업은 합작하고 있는 정부성 융자담보기구에 신청할 수 있다. **Q13. 어떠한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에 중앙재정 이자할인자금을 지원하는지?**A13: 이자할인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첫째 전염병에 사용하는 의료용 방호복, 격리복, 의료용 및 보호기능을 갖춘 민간용 마스크, 의료용 보호경,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감압 구급차, 소독기, 살균용품, 적외선 측정기, 스마트 모니터링 및 검측시스템, 관련 약품 등 중요 의료용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둘째, 상술한 물자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원부자재 생산기업, 중요 설비 제조기업 및 관련 부대기업. 셋째, 중요한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핵심 기업. 넷째, 중요한 의료용 물자 비축기업. 다섯째, 전염병 관련 정보통신설비 및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과 상술한 물자의 운수, 판매 임무를 수행하는 기업.**Q14. 중앙재정 이자할인 자금을 지원하는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명단은 어떻게 확정하는지?**A14: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명단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등 부서에서 확정하고 전국범위 명단과 지역범위 명단으로 구분한다. 전국범위 명단에는 중앙기업과 지방기업이 포함되며, 중앙기업은 관련 업종 주무부처에서 또는 직접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에 신청한다. 지방기업은 각 성(省)급 발전개혁, 공업및정보화 부서에서 심사 취합하여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에 일괄 보고한다. 지역범위 명단은 호북성, 절강성, 광동성, 하남성, 호남성, 안휘성, 중경시, 강서성, 북경시, 상해시 등 10개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명단을 마련하고 성(省)급 발전개혁, 공업및정보화 부서에서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에 등기(備案)한다. **Q15. 인민은행 재대출은 어떻게 지급되는지?**A15: 인민은행은 전국범위 은행과 전염병 방역 중점지역의 지방법인은행에 전용재대출금을 지급한다. 전국범위 은행은 전국범위 명단 내 기업에 대한 우대 대출금 지급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지방법인은행은 해당 지역 지방범위 명단 내 기업에게 우대 대출금을 지급한다. 전국범위 은행: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9개 은행.**Q16. 중앙재정 이자할인 조건은 무엇인가? 이자할인 수준은?**A16: 중앙재정 이자할인 조건: 첫째, 기업이 인민은행 전용재대출 지원 혜택을 향유. 둘째,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염병 방역기간 중에 신규 생성된 계약 신청에 의함. 이자할인 수준: 중앙재정은 기업이 실제 획득한 대출이자율의 50%를 기준으로 이자 할인 진행하고 기업의 실제 융자원가가 1.6% 이하까지 인하되도록 보장한다. 이자할인 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Q17. 중앙재정 이자할인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A17: 중앙기업은 직접 재정부에 신청한다. 지방기업은 소재지 재정부문에 이자할인 지원을 신청한다. 성(省)급 재정부문은 해당 지역의 이자할인 신청을 취합한 후 재정부에 일괄 보고한다. 재정부는 심사 후 중앙기업과 성(省)급 재정부서에 이자할인 자금을 교부한다. 성(省)급 재정부서는 이자할인 자금을 직접 지방기업에 교부한다. 성(省)급 재정부서는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이자할인 자금 결산내용을 취합하여 함께 재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Q18. 전염병 방역 중점보장기업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은 어떻게 명단 진입 및 대출지원을 신청하는지?**A18: 전염병 방역 물자 보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점 의료용 물자, 생활필수품 생산기업은 명단에 포함되기 전에 ‘긴급 안건 긴급 처리, 특수 안건 특별 처리’ 원칙에 따라 먼저 금융기구에 신용대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구는 심사와 동시에 즉시 성(省)급 발전개혁,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신청한다. **Q19. 전염병 방역 기간에 중앙재정이 자금을 안배하여 중외항공운수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홍콩-마카오-대만 노선의 항공편도 참조하여 집행하는지? 민용항공(General Aviation)기업이 집행하는 전염병 방역 업무는 어떻게 확정되는지?**A19: 2개 항목의 지원정책이 있다. 국제 정기 여객운송 항공편에 대한 장려금과 중대 운수 비행업무를 이행하는 항공편에 대한 적절한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염병 기간 중 중국 경내 웨이포인트[[1]](#footnote-1)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불포함)과 경외 웨이포인트 간을 왕복 비행 (또는 리턴 비행)하는 국제 정기 여객운송 항공편에 대한 장려금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항로 항공편은 이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 및 국외 항공회사로 구분되지 않으며 모두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 국무원 연합방역기제 배치에 따라 중대 운수 비행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조금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항공운수기업이다. 민용항공기업이 국무원 연합방역기제 배치에 따라 중대 운수 비행업무를 이행한 경우, 현행 <민용항공발전 전용자금 관리 임시방법>(민항발[2012]111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Q20. 전염병 방역 기간 중 중앙재정이 자금을 안배하여 중외항공운수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원 기준은 어떻게 확정하는지?**A20: 첫째, 국제항공편 장려금 기준의 확정. 전염병 영향정도, 항공편 평균 운행원가 등 요소를 주로 고려하여 총괄적으로 확정한다. 장려금 기준은 공동운항과 단독운항 2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단독운항 항공노선을 진일보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장려금 기준은 단독운항 항공편에 편향하여 지원한다. 상술한 원칙에 따라 공동운항 항공편의 장려금 기준은 1km/1좌석 당 0.0167위안, 단독비행 장려금 기준은 1km/1좌석 당 0.0528위안이다. 둘째, 중대 운수 비행업무 보조금 기준의 확정. 사실에 근거한 결산방식을 도입한다. 즉, 전염병이 해소된 후, 중대 운수 비행업무 이행에 따른 실제 운수원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보조한다. 업무 위탁파견단위가 비용을 지불하였거나 또는 항공편 항공권 판매 등 기타 수입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심사 확정할 때 공제한다. 민용항공기업이 집행한 전염병 방역 업무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민용항공발전 전용자금 관리 임시방법>(민항발[2012]111호) 제6조에서 정한 ‘긴급 구호작업’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Q21. 전염병 방역 기간 중 중앙재정이 자금을 안배하여 중외항공운수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신청 심사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은?**A21: 자금신청 절차: 첫째, 국제 항공편 장려자금의 신청절차. 각 항공회사는 매월 7일 전까지 직전 월의 국제 항공편 집행 현황에 따라 민항국, 재정부에 자금신청문건을 제출한다. 자금신청문건에는 비행 항공노선, 운행 편수, 기종, Available Seat Kilometers (ASK)[[2]](#footnote-2), 물자 목록 및 유관 원가 및 수입 데이터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항공회사는 동시에 자금 수취 은행 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중대 운수 비행업무 보조금의 신청절차. 전염병이 해소된 후, 국내 각 항공회사는 전염병 예방기간에 수행한 중대 운수 비행업무 현황에 따라 민항국, 재정부에 자금신청문건을 전달한다. 민용항공기업의 전염병 방역 임무 이행에 관한 보조금 신청절차는 <민용항공발전 전문자금 관리 임시방법>(민항발[2012]111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자금 교부 절차: 재정예산 관리 요구에 따라 중국항공집단공사, 중국동방항공집단공사, 중국남방항공집단공사의 자금은 중앙기업 본(本)급 예산으로 포함시키고 재정부가 직접 교부한다. 기타 국내 항공회사의 자금은 중앙을 통해 지방에 이전 지불하는 방식으로 교부하고, 지방 재정부서에서 책임지고 교부한다. 외국항공회사의 자금은 민항국 부서 예산에 포함시키고, 민항국에서 넘긴다. 기타 주의사항: 첫째 중국항공집단공사, 중국동방항공집단공사, 중국남방항공집단공사를 제외한 기타 국내 항공회사는 신청문건과 유관 자료를 기업 등기 소재지의 민항 지역 관리국과 성(省)급 재정부문에 동시에 전달해야 한다. 민항국은 각 항공회사의 자금 신청자료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재정부에 보고한다. 재정부는 예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교부한다. 둘째, 각 항공회사는 신청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단위도 지원자금을 압수, 유용할 수 없다. 심사 중 거짓 또는 은닉 보고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항공회사의 신청자격을 취소한다.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유관 규정을 위반하는 단위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재정 위법행위 처벌 처분 조례>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  **(2) 세비우대****Q22. 전염병 영향을 크게 받은 교통운수, 요식, 숙박, 여행 등 업종 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세수우대정책이 발표되었는지?**A22: 전염병 영향을 크게 받은 교통운수 등 업종 기업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수 우대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전염병 발생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아 어려움에 처한 업종의 기업에서 2020년 발생하는 결손에 대하여, 최장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기업에는 교통운수,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 관광구역 관리 2개류를 지칭함)의 4대 업종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현행 <국민경제업종분류>를 근거로 집행한다. 어려움에 처한 업종 기업의 2020년 주(主)비즈니스 매출액은 전체 매출총액(비과세수입과 투자수익 제외) 대비 50% 이상을 점유해야 한다. 둘째, 납세자가 공공교통운수, 생활서비스 및 주민에게 필수적인 생활물자 택배 수취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공공교통운수서비스에는 페리여객 운송, 대중교통 여객 운송, 지하철, 도시 경전철, 택시, 장거리 여객 운송, 정기 운행차량이 해당된다. 생활서비스에는 문화 체육 서비스, 교육 의료 서비스, 여행 오락 서비스, 요식 숙박 서비스, 주민 일상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상술한 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발생 상황을 살펴 별도로 공고한다. **Q23. 개체공상호와 영세기업의 업무개시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세수 우대정책이 발표되었는가?**A23: 2020년 3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호북성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를 대상으로 3% 징수율을 적용하는 과세판매수입에 대하여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3% 선납 징수율을 적용하는 선납 증치세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증치세 선납을 중단한다. 호북성 이외 기타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를 대상으로 3% 징수율을 적용하는 과세판매수입에 대하여 1% 징수율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징수한다. 3% 선납 징수율을 적용하는 선납 증치세 항목에 대해서는 1% 서납징수율로 감면하여 증치세를 선납한다. **Q24. 전염병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기부를 장려하는 어떠한 세수 우대정책이 발표되었는가?**A24: 사회 각계가 적극적으로 기부금 및 기부물품을 통해 전염병 방역 업무를 지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음의 세수 우대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기업 및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 등 국가기관을 통해 전염병 대응용 현금과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둘째, 기업과 개인이 직접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임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전염병 대응용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시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기부자는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임무를 담당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기부금 접수문건을 기준으로 세전 공제 업무를 처리한다. 셋째, 단위와 개체공상호가 자가 생산하거나 위탁가공 또는 구매한 화물을 공익성 사회조직 및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 등 국가기관을 통해 또는 직접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임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감염병 대응용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의 징수를 면제한다. 국가기관, 공익성 사회조직 및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임무를 담당하는 병원이 접수한 기부는 전염병 대응용으로 전용되어야 하며, 기타 용도로 유용할 수 없다. 상술한 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상황을 살펴 별도로 공고한다. **Q25. 전염병 방역용 수입물자를 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면세정책이 발표되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A25: 전염병 방역업무를 진일보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더욱 혜택을 주는 수입 세수정책을 실시한다. <자선 기부물품 수입세수 징수면제 임시방법>(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 제102호)에서 정한 면세 수입물자 범위, 면세 주체 범위, 기부수혜자 범위 등을 적절하게 확대한다. 전염병 방역에 사용되는 수입물자를 기부하는 경우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 징수를 면제한다. 신청방식의 경우, 기부수혜자가 소재지 세관에서 감면세 수속을 처리한다. **Q26. 면세 수입물자와 관련하여 이미 징수한 면세세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신청하는가?**A26: 2020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면세수입물자에 대해 이미 징수한 면세세액의 환급을 허용한다. 이중 이미 세금을 징수하고 수입하였으나 아직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발급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수입물자 증치세 매입세액 미공제증명>을 지참하여 세관에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에서의 증치세, 소비세에 대한 환급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에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 소비세에 대한 환급 수속만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감면세 신청인은 2020년 9월 30일(해당일 포함)까지 소재지 세관에서 감면세 수속을 보충 처리한 후에 세액환급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Q27. 면세수입물자와 관련한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A27: 면세수입물자는 세관총서공고 2020년 제17호에 따라 또는 이를 참고하여 우선 등기하고 통관한 후 규정에 따라 유관 수속을 보충 처리할 수 있다. **Q28. 전염병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사업성 수수료와 정부성기금에 대한 어떠한 감면정책이 발표되었는가?**A28: 전염병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행정사업성 수수료 및 공익성기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긴급 심사절차에 진입하였고 신종코로나 관련 방역제품인 경우에는 의료기기 제품등록비 징수를 면제한다. 둘째, 약품 특별 심사절차에 진입하였고, 신종코로나 치료 및 예방 약품인 경우에는 약품등록비 징수를 면제한다. 셋째, 항공회사가 납부해야 할 민항발전기금의 징수를 면제한다. 상술한 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료일은 전염병 상황을 살펴 별도로 공고한다. 넷째, 수출입화물 즉 해외 수출 및 해외 수입 화물에 대한 항구건설비 징수를 면제한다. 선박오일 오염손해배상기금은 50% 감면하여 징수한다. 본 정책은 2020년 3월 1일 0시부터 2020년 6월 30일 24시까지 시행하며, 선박의 항구 진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감면조건에 부합하나 비용납부인이 이미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중앙해사관리기구가 비준을 받은 유관 은행계좌에서 비용 환급을 처리하거나 비용납부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Q29.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이 질서 있게 생산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적인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조치가 발표되었는가?**A29: 국무원 동의를 득해 재정부는 유관 부서와 공동으로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20]11호)를 제정 발표하여 지방에서 단계적인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도하였다. 2020년 2월부터 호북성 이외의 각 省(市, 區)에서는 중소 영세기업의 기본양로, 실업 및 공상보험(이하 ‘3항 사회보험’으로 통칭) 단위 납부비용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고 징수면제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대형기업 등 기타 보험가입단위(기관사업단위 불포함)의 3항 사회보험 단위 납부비용은 50% 감면하여 징수하며, 징수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2020년 2월부터 호북성에서는 각종 보험가입단위(기관사업단위 불포함)의 3항 사회보험비 단위 납부비용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고, 징수면제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Q30. 전염병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이 사회보험비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A30: 전염병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보험가입단위는 유관 규정에 따라 3항 사회보험비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연기 집행기간은 2020년 내이며, 납부 연기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납부 연기기간에는 체납금 징수를 면제한다. 사용단위가 직원과 만장일치로 협상하여 대리 공제 및 납부하는 개인 납부비용 부문도 동시에 납부 연기하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보험가입단위에서 적시에 비용을 납부한다. **Q31.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의 생산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기본의료보험 단위납부비용에 대한 어떠한 단계적 감면징수 조치가 발표되었는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또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A31: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단계적 감면징수에 관한 지도의견>(의보발[2020]6호)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2월부터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이 총괄 지역을 지도하여 기금 운영상황 및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기금의 중장기 수지(收支) 균형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직원 의료보험 단위 납부비용 부문에 대한 50% 감면 징수를 실행할 수 있고, 감면징수기간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총괄기금 누적 결산잔액으로 6개월 이상 지불할 수 있는 총괄지역에서 감면징수를 실시할 수 있고, 6개월 미만이나 감면징수가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성(省)에서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안배한다. 전염병 대응을 위해 이전에 의보국에서 문건을 발표하여 보험가입단위 및 개인의 의료보험비 납부 연기 정책을 분명히 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고, 납부 연기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납부 연기 기한에는 체납금 징수를 면제한다. 각 지역은 실시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감면징수 및 납부 연기 시행이 보험가입자가 당기에 보험혜택을 누리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둘째, 총괄지역을 지도하여 기금 수지의 중장기 균형을 확보한다. 셋째, 이미 단위 보험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지역에서는 계속하여 집행할 수도 있고, 의보발[2020]6호 문건의 정신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도 있다. 단, 요율 인하와 50% 감면 징수 조치를 중첩하여 시행할 수 없다. **Q32.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은 어떠한 주방공적금 단계적 지원 정책을 향유할 수 있는가?**A32: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주방공적금 연기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Q33. 전염병 심각 또는 비교적 심각으로 인정받은 지역에서 기업이 직원과 협의하여 주방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는가?**A33: 전염병 심각 또는 비교적 심각으로 인정받은 지역에서 기업은 직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는 전제 하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주방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계속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주적으로 납부비율을 확정한다.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부중단 기간과 납부기간을 연속하여 계산하여 영향을 주지 않고 직원이 정상적으로 주방공적금을 인출하고 주방공적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다. **(3) 정부조달****Q34. 기업의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정부 구매와 관련된 어떠한 지원 조치가 있는지?**A34: <재정부의 기업 생산 개재를 지원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필요한 의료물자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과 관한 통지>(재판[2020]8호)에서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 조직이 재정성 자금을 사용하여 전염병 방역 관련 화물, 공정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긴급 구매항목으로 집행하고, 정부구매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집행할 필요가 없으며 화물, 공정, 서비스 품질을 보증한다는 전제 하에 우선 생산 재개기업에서 직접 구매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Q35. 전염병 방역 기간에 구매항목의 전자화 실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A35: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는 최대한 온라인 구매문건 제공, 입찰(회답)문건 제출, 전자 개찰 및 전자 평가심사 등 절차를 실시한다. 각 지역 전자매장의 전염병 방역 관련 물자에 대한 화물원(源) 조직 강화를 장려한다. 전문구역을 설치하여 전염병 방역 구매 수요 정보와 공급업체 공급 정보를 발표하여 수요와 공급의 연결을 촉진한다. 전자매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과 공급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조품 제공, 물가 인상 등 위법 위규 행위를 처리한다.  |  | **财政支持新冠肺炎疫情防控政策措施问答**2020年3月20日 来源：财政部办公厅疫情就是命令、防控就是责任，确保财政支持疫情防控政策措施落实到位，有效发挥作用，是财政部门的重要任务。为帮助社会各界准确掌握和及时适用财政支持疫情防控政策措施，财政部从政策受益者和政策落实者角度，分类梳理了出台的政策措施，形成了《财政支持新冠肺炎疫情防控政策措施问答》，供查阅。**面向企业的政策措施**1. **资金支持**

**11.在对疫情防控重点保障企业贷款给予财政贴息方面出台了哪些政策，使用贷款资金有哪些要求？**答：对2020年新增的疫情防控重点保障企业贷款，在人民银行专项再贷款支持金融机构提供优惠利率信贷的基础上,中央财政给予贴息支持，贴息期限不超过1年。使用优惠贷款要求：享受贴息支持的贷款企业不得挪用信贷资金用于偿还企业其他债务；不得将资金用于金融投资、理财等套利活动；不得将资金用于非疫情防控相关生产经营活动；不得不服从国家统一调配生产物资。金融机构授信额度不得超过名单内企业疫情防控所需的相关生产经营活动资金规模；不得将运用专项再贷款发放的贷款资金用于名单内企业一般性资金需求；不得提前收回存量贷款续做以套取再贷款资金。**12.在优化对受疫情影响企业的融资担保服务方面出台了哪些政策，如何申请？**答：对受疫情影响的小微企业，各级政府性融资担保、再担保机构降低担保和再担保费率，取消反担保要求。对受疫情影响严重地区的融资担保机构、再担保机构，国家融资担保基金减半收取再担保费。企业可向其合作的政府性融资担保机构提出申请。**13.中央财政贴息资金支持哪些疫情防控重点保障企业？**答：贴息资金支持的企业：一是生产应对疫情使用的医用防护服、隔离衣、医用及具有防护作用的民用口罩、医用护目镜、新型冠状病毒检测试剂盒、负压救护车、消毒机、消杀用品、红外测试仪、智能监测检测系统和相关药品等重要医用物资企业；二是生产上述物资所需的重要原辅材料生产企业、重要设备制造企业和相关配套企业；三是生产重要生活必需品的骨干企业；四是重要医用物资收储企业；五是为应对疫情提供相关信息通信设备和服务系统的企业以及承担上述物资运输、销售任务的企业。**14.中央财政贴息资金支持疫情防控重点保障企业名单如何确定？**答：疫情防控重点保障企业名单由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等部门确定，分为全国性名单和地方性名单。全国性名单包括中央企业和地方企业，中央企业可由相关行业主管部门或直接向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申请。地方企业由各省级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部门审核汇总报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地方性名单是湖北省、浙江省、广东省、河南省、湖南省、安徽省、重庆市、江西省、北京市、上海市等10个地区，自主建立本地区的疫情防控重点保障企业名单，由省级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部门报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备案。**15.人民银行再贷款如何发放？**答：人民银行向全国性银行和疫情防控重点地区地方法人银行发放专项再贷款。全国性银行重点向全国性名单内企业发放优惠贷款，地方法人银行向本地区地方性名单内企业发放优惠贷款。全国性银行：开发银行、进出口银行、农业发展银行、工商银行、农业银行、中国银行、建设银行、交通银行、邮政储蓄银行等9家。**16.中央财政贴息条件是什么，贴息力度如何？**答：中央财政贴息条件：一是企业享受人民银行专项再贷款支持；二是凭借2020年1月1日后疫情防控期内新产生的合同申请。贴息力度：中央财政按企业实际获得贷款利率的50%进行贴息，确保企业实际融资成本降至1.6%以下，贴息期限不超过一年。**17.如何申请中央财政贴息资金，应注意哪些方面？**答：中央企业直接向财政部申请；地方企业向所在地财政部门申请贴息支持，省级财政部门汇总本地区贴息申请后报送财政部。财政部审核后向中央企业和省级财政部门拨付贴息资金，省级财政部门将贴息资金直接拨付地方企业。省级财政部门应于2020年5月31日前汇总一并向财政部申请贴息资金结算。**18.暂时没有纳入疫情防控重点保障企业名单的企业如何申请纳入名单和贷款？**答：对疫情防控物资保障有重要作用的重点医用物资、生活必需品生产企业，未纳入名单前可按照“急事急办、特事特办”原则，先向金融机构申请信贷支持，在金融机构审核的同时，及时向省级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部门申请纳入名单。**19.疫情防控期间，中央财政安排资金对中外航空运输企业予以支持，支持对象有哪些，港澳台地区航线航班是否参照执行，通航企业执行的疫情防控任务如何确定？**答：有两项支持政策，分别是对国际定期客运航班给予奖励和对执行重大运输飞行任务的航班给予适当补助。具体如下：一是对疫情期间执飞（或复航）往返我境内航点（不含港澳台地区）与境外航点间的国际定期客运航班给予奖励。港澳台地区航线航班参照执行。支持对象不分国内还是国外航空公司，均一视同仁。二是对按照国务院联防联控机制部署执行重大运输飞行任务给予适当补助。支持对象是国内航空运输公司。对于通航企业按照国务院联防联控机制部署执行重大运输飞行任务，按照现行《通用航空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民航发〔2012〕111号）有关规定执行。**20.疫情防控期间，中央财政安排资金对中外航空运输企业予以支持，支持标准如何确定？**答：一是国际航班奖励标准的确定。主要考虑疫情影响程度、航班平均运行成本等因素统筹确定。奖励标准分为共飞和独飞两档，为进一步支持和鼓励独飞航线，奖励标准向独飞航班倾斜。按照上述原则，确定共飞航班的奖励标准为每座公里0.0176元，独飞航班的奖励标准为每座公里0.0528元。二是重大运输飞行任务补助标准的确定。采用据实结算的方式，即在疫情结束后，根据执行重大运输飞行任务实际运输成本给予适当补助。如果任务委派单位有付费，或航班有售票等其他收入来源，在核定补贴时将予以扣除。通航企业执行的疫情防控任务补助标准，按照《通用航空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民航发〔2012〕111号）第六条规定的“应急救援作业”补贴标准执行。**21.疫情防控期间，中央财政安排资金对中外航空运输企业予以支持，具体申报审核程序有哪些，应注意哪些事项？**答：资金申报程序：一是国际航班奖励资金申报程序。各航空公司于每月7日前根据上月国际航班执行情况，向民航局、财政部报送资金申请文件。资金申请文件应包括执飞航线、班次、机型、可供座公里、物资清单以及有关成本和收入数据等内容。外国航空公司同时还需提供接收资金银行账户的具体信息。二是重大运输飞行任务补助资金申报程序。疫情结束后，国内各航空公司根据疫情防控期间执行重大运输飞行任务情况，向民航局、财政部报送资金申请文件。通航企业执行疫情防控任务的补助资金申报程序按照《通用航空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民航发〔2012〕111号）有关规定执行。资金下达程序：按照财政预算管理要求，中国航空集团公司、中国东方航空集团公司、中国南方航空集团公司的资金列入中央企业本级预算，由财政部直接拨付。其他国内航空公司的资金通过中央对地方转移支付方式下达，由地方财政部门负责拨付；外国航空公司的资金纳入民航局部门预算，由民航局转拨。其他注意事项：一是除中国航空集团公司、中国东方航空集团公司、中国南方航空集团公司以外的其他国内航空公司，应同时将申请文件和相关资料抄送企业注册所在地的民航地区管理局和省级财政部门。民航局对各航空公司的资金申报材料进行审核后，将审核结果报财政部。财政部按照预算管理有关规定下拨资金。二是各航空公司应对申报材料的真实性和准确性负责，任何单位不得截留、挪用支持资金。审核中发现虚报、瞒报的，将取消该航空公司申请资格；对于违反国家法律、行政法规和有关规定的单位和个人，将严格按照《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等予以处理。**（二）税费优惠****22. 对受疫情影响较大的交通运输、餐饮、住宿、旅游等行业企业，出台了哪些税收优惠政策？**答：对受疫情影响较大的交通运输等行业企业，国家出台了以下税收优惠政策：一是受疫情影响较大的困难行业企业2020年度发生的亏损，最长结转年限由5年延长至8年。困难行业企业，包括交通运输、餐饮、住宿、旅游（指旅行社及相关服务、游览景区管理两类）四大类，具体判断标准按照现行《国民经济行业分类》执行。困难行业企业2020年度主营业务收入须占收入总额（剔除不征税收入和投资收益）的50%以上。二是对纳税人提供公共交通运输、生活服务，以及为居民提供必需生活物资快递收派服务取得的收入，免征增值税。公共交通运输服务包括轮客渡、公交客运、地铁、城市轻轨、出租车、长途客运、班车；生活服务包括文化体育服务、教育医疗服务、旅游娱乐服务、餐饮住宿服务、居民日常服务等。上述政策自2020年1月1日起实施，截止日期视疫情情况另行公告。**23.为支持个体工商户和小微企业复工复业，出台了哪些税收优惠政策？**答：自2020年3月1日至5月31日，对湖北省增值税小规模纳税人，适用3%征收率的应税销售收入，免征增值税；适用3%预征率的预缴增值税项目，暂停预缴增值税。除湖北省外，其他省、自治区、直辖市的增值税小规模纳税人，适用3%征收率的应税销售收入，减按1%征收率征收增值税；适用3%预征率的预缴增值税项目，减按1%预征率预缴增值税。**24.为支持疫情防控工作，出台了哪些鼓励社会各界捐赠的税收优惠政策？**答：为鼓励社会各界踊跃捐款捐物支持疫情防控工作，国家出台了以下税收优惠政策：一是企业和个人通过公益性社会组织或者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捐赠用于应对疫情的现金和物品，允许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全额扣除。二是企业和个人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捐赠用于应对疫情的物品，允许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全额扣除。捐赠人凭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开具的捐赠接收函办理税前扣除事宜。三是单位和个体工商户将自产、委托加工或购买的货物，通过公益性社会组织和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部门等国家机关，或者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无偿捐赠用于应对疫情的，免征增值税、消费税、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地方教育附加。国家机关、公益性社会组织和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接受的捐赠，应专项用于应对疫情工作，不得挪作他用。上述政策自2020年1月1日起实施，截止日期视疫情情况另行公告。**25.对捐赠用于疫情防控的进口物资，出台了哪些免税政策，如何申请？**答：为进一步支持疫情防控工作，自2020年1月1日至3月31日，实行更优惠的进口税收政策，适度扩大《慈善捐赠物资免征进口税收暂行办法》（财政部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102号）规定的免税进口物资范围、免税主体范围、受赠人范围等，对捐赠用于疫情防控的进口物资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关于申请方式，由受赠人向所在地海关办理减免税手续。**26.对免税进口物资，已征收的应免税款如何处理，如何申请？**答：自2020年1月1日至3月31日，免税进口物资已征收的应免税款予以退还。其中，已征税进口且尚未申报增值税进项税额抵扣的，可凭主管税务机关出具的《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物资增值税进项税额未抵扣证明》，向海关申请办理退还已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手续；已申报增值税进项税额抵扣的，仅向海关申请办理退还已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消费税手续。减免税申请人应在2020年9月30日前（含当日）向其所在地海关补办减免税手续后，办理退税手续。**27.对免税进口物资，如何快速办理通关？**答：免税进口物资可按照或比照海关总署公告2020年第17号，先登记放行，再按规定补办相关手续。**28.为支持疫情防控工作，出台了哪些行政事业性收费和政府性基金减免政策？**答：为支持疫情防控工作，国家出台了免征部分行政事业性收费和政府性基金政策。具体如下：一是对进入医疗器械应急审批程序并与新冠肺炎相关的防控产品，免征医疗器械产品注册费。二是对进入药品特别审批程序、治疗和预防新冠肺炎的药品免征药品注册费。三是免征航空公司应缴纳的民航发展基金。上述政策自2020年1 月1 日起实施，截止日期视疫情情况另行公告。四是免征进出口货物，即出口国外和国外进口货物的港口建设费；减半征收船舶油污损害赔偿基金。该政策自2020年3月1日零时起至2020年6月30日24时止执行，以船舶进出港时点为准。对符合减免条件但缴费人已缴费的，由中央海事管理机构从经批准的相关银行账户中办理退费或从缴费人应缴费额中予以抵扣。**29.为纾解企业困难，推动企业有序复工复产，出台了哪些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的措施？**答：经国务院同意，财政部配合有关部门制发了《关于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的通知》（人社部发〔2020〕11号），指导地方实施阶段性减免社会保险费政策。自2020年2月起，湖北以外各省（区、市）可免征中小微企业基本养老、失业和工伤保险（以下统称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免征期限不超过5个月；减半征收大型企业等其他参保单位（不含机关事业单位）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减征期限不超过3个月。自2020年2月起，湖北省可免征各类参保单位（不含机关事业单位）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免征期限不超过5个月。**30.受疫情影响生产经营出现严重困难的企业，可否申请缓缴社会保险费？**答：受疫情影响生产经营出现严重困难的参保企业，可按有关规定申请缓缴三项社会保险费。缓缴执行期为2020年内，缓缴期限原则上不超过6个月，缓缴期间免收滞纳金。用人单位与职工协商一致，同时缓缴代扣代缴个人缴费部分的，期满前由参保单位及时缴费。**31.为切实减轻企业负担，支持企业复工复产，出台了哪些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单位缴费措施，各地如何操作，有哪些注意事项？**　　答：根据《关于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指导意见》（医保发〔2020〕6号）规定，自2020年2月起，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可指导统筹地区，根据基金运行情况和实际工作需要，在确保基金中长期收支平衡的前提下，对职工医保单位缴费部分实行减半征收，减征期限不超过5个月。原则上统筹基金累计结存可支付月数大于6个月的统筹地区可实施减征，小于6个月但确有必要减征的，由各省统筹考虑安排。为应对疫情，此前医保局已发文明确参保单位和个人可延期缓缴医保费政策可继续执行，缓缴期限原则上不超过6个月，缓缴期间免收滞纳金。各地在实施过程中，需注意以下事项：一是实施减征和缓缴不能影响参保人享受当期待遇。二是要指导统筹地区确保基金收支中长期平衡。三是已经实施阶段性降低单位费率的地区可继续执行，也可按照医保发〔2020〕6号文件精神调整政策，但不得叠加实施降低费率和减半征收措施。**32.受疫情影响的企业，可享受哪些住房公积金阶段性支持政策？**答：受疫情影响的企业，可以申请在2020年6月30日前缓缴住房公积金。**33.经认定的疫情严重和较严重地区，企业可否与职工协商缴存住房公积金？**答：经认定的疫情严重和较严重地区，企业在与职工充分协商的前提下，可在2020年6月30日前自愿缴存住房公积金。继续缴存的，自主确定缴存比例；停缴的，停缴期间缴存时间连续计算，不影响职工正常提取住房公积金和申请住房公积金贷款。**（三）政府采购****34.在支持企业复工复产方面有哪些相关政府采购支持措施？**答：《财政部关于支持企业复工复产做好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所需医疗物资生产供应的通知》（财办〔2020〕8号）明确，各级国家机关、事业单位和团体组织使用财政性资金采购疫情防控相关货物、工程和服务的，作为紧急采购项目执行，无需执行政府采购法规定的方式和程序，在保证货物、工程和服务质量的前提下，优先向复工复产企业直接采购。**35.疫情防控期间，如何推进采购项目电子化实施？**答：有条件的地方尽量在线提供采购文件、提交投标（响应）文件，实行电子开标、电子评审等流程。鼓励各地区电子卖场加强疫情防控相关物资的货源组织。设置专区发布疫情防控采购需求信息和供应商供应信息，促进供需对接。加强对电子卖场的价格监控和供应商管理，依法处理提供假冒伪劣产品、哄抬物价等违法违规行为。 |

1. 웨이포인트(Waypoint)는 경로 또는 여행 노선의 중간지점 또는 장소, 코스가 변경되는 정지 지점을 의미하는 용어. [↑](#footnote-ref-1)
2. Available Seat Kilometers (ASK)는 항공산업에서 이용 가능한 좌석 킬로미터를 의미하며 이는 승객 수송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됨. [↑](#footnote-ref-2)